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광역철도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  
■ 정성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990호)

2025.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중 수

## 목 차

|                                   |   |
|-----------------------------------|---|
| □ 정성호의원 대표발의(제2205990호) .....     | 1 |
| Ⅰ. 제안경위 .....                     | 1 |
|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Ⅲ. 검토의견 .....                     | 3 |
| 1. 광역철도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 ..... | 3 |

## □ 정성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990호)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성호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11. 28.

3. 회 부 일 : 2024. 11. 29.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광역철도 건설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70:30 또는 50:50)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광역철도 운영비 분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현재 광역철도 운영비는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훈령, 2014. 5. 17. 제정)이 마련된 이후에 사업추진이 확정된 광역철도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음.

그런데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 이전에 건설된 다수의 광역철도의 경우 정부가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는 반면, 최근에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광역철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여 비용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 운영비를 분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도시권 광역철도 건설을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 Ⅲ. 검토의견

1. 광역철도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10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도시권에서 운행되는 광역철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분담하는 운영비 지원의 기준, 대상, 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 ⑩ (생략) |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
| <u>&lt;신설&gt;</u>                   | <p>⑪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철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운영비”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담하는 운영비 지원의 기준, 대상, 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⑫ 지방자치단체가 제11항에 따른 운영비를 분담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비”는 “운영비”로 본다.</p> |
| <u>&lt;신설&gt;</u>                   |                                                                                                                                                                                                                   |

| 현행 | 개정안                                |
|----|------------------------------------|
|    | 부칙<br>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2조제2호나목<sup>1)</sup>에 따르면, 광역철도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sup>2)</sup>에서는 광역철도의 지정 요건으로 i) 시·도 간

###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도시권”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 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 다.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철도 역(驛)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 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하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 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
  - 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에 따른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라 한다)
  -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 3. (생략)

###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광역철도)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이를 연결하고 ii) 전체 구간이 대도시권<sup>3)</sup>에 포함되며 iii) 권역별 기점(예를 들어, 수도권  
의 경우 서울특별시청 또는 강남역)을 중심으로 반지름 40km 이내, 표  
정속도 50km/h(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광역철도는 40km/h)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음.

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 관련 재정지원에 관하여는 현행 제10조제  
2항<sup>4)</sup>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선의 기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

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거나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일 것
2. 전체 구간이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되고, 같은 표에 따른 권역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40킬로미터 이내일 것
  - 가. 수도권: 서울특별시청 또는 강남역
  - 나. 부산·울산권: 부산광역시청 또는 울산광역시청
  - 다. 대구권: 대구광역시청
  - 라. 광주권: 광주광역시청
  - 마. 대전권: 대전광역시청
3. 표정속도(表定速度,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50킬로미터(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시속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철도로 지정·고시되었더라도 노선연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의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폐지로 인하여 제5조제8호에 따른 분담의 비율이 변경되더라도 지정 폐지 시까지 관계 시·도가 분담한 비용은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3) 현행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대도시권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대도시권의 범위를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음.
-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는 제외한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선의 기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고려하여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에 필요한 비용(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민간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공제한 사업비를 말한다)을

재정 등을 고려하여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 13조<sup>5)</sup>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비율을 각각 70% 및 30%로 하 되, 서울특별시의 경우 5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광역철도의 건설 주체와 관계없이 동일한 부담비율을 적용<sup>6)</sup>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관계 시·도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의 광역철도 구간에 실제 들어간 사업비를 기준으로 부담한다. 다만, 관계 시·도지사가 서로 협의하여 부담률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시·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해당 시·도와 관계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률은 시·도지사가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건설 등 특정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거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한 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교통시설이 원활히 건설될 수 있도록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분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그 해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해당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는 그 보조금 또는 부담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⑩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버스정류소 등 개별 환승시설을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쳐 부담할 수 있다.

####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비용의 부담)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70퍼센트를 부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30퍼센트를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서울특별시가 사업 구간에 포함된 경우 서울특별시에 대한 부담률은 국가가 50퍼센트를 부담하고, 서울특별시가 50퍼센트를 부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철도에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광역철도의 철도시설(「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중 화물을 운송(화물의 취급을 포함한다)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는 것으로, 국가가 건설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일반철도<sup>7)</sup>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 주체인 도시철도에 대한 국고보조율<sup>8)</sup>에 비해 10% 높은 수준의 지원임.

#### < 일반철도·광역철도·도시철도 건설비 국고보조율 비교 >

| 일반철도 | 광역철도         | 도시철도        |
|------|--------------|-------------|
| 100% | 70%(서울시 50%) | 60%(서울 40%) |

자료 : 국토교통부

한편, 광역철도 사업의 건설 또는 운영 주체나 운영비 부담에 관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고,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훈령, 2014.5.17. 제정) 제3조<sup>9)</sup>에서는 광역철도사

6) 2014년도 현행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개정[대통령령 제25281호, 2014. 3. 28, 일부개정] 이전까지 광역철도 건설비에 대한 국가 부담 비율은 사업의 시행 주체에 따라 차등 지원되었는데, 국가가 시행하는 경우 75%, 지자체가 시행하는 경우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국고보조율[60%(서울 40%)]이 적용되었음.

7)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철도건설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철도는 국고 부담으로 하고, 고속철도는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담으로 한다.

②(생략)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도시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은 서울과 지방 각각 40% 및 60%로 규정하고 있음.

9)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훈령 제2020-3호, 2020.8.6. 시행]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건설·운영주체) 광역철도 사업의 건설·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운영중인 도시철도 연장형** : 기존 노선과의 연계 및 기존 도시철도 운영 효율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자와 운영비용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운영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것.

2. **기존선 개량형** : 기존의 국가철도망으로서 국가가 건설하고, 해당 광역철도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운영하되, 운영에 따른 손실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것.

3. **신설형** : 국가철도망 추진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가 건설·운영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요구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자와 운영비용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운영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것. 다만, 국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업 유형별로 i) 운영 중인 도시철도 연장형 ii) 기존선 개량형 iii) 신설형으로 구분하여 건설 및 운영 주체를 규정하고 있음.

**< 광역철도사업 유형별 건설·운영 주체 >**

| 구 분          | 운영 중인 도시철도 연장형                                         | 기존선 개량형                  | 신설형                                         |
|--------------|--------------------------------------------------------|--------------------------|---------------------------------------------|
| 건설주체         | 지자체                                                    | 국가                       | 국가(지자체 요구에 의한 경우 지자체)                       |
| 운영주체         |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정한 자                                    | 국토부장관이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 | i) 국가 또는<br>ii) 지자체가 건설하는 경우 직접 운영 또는 지정한 자 |
| 운영비          | 전액 지방비                                                 | 전액 지방비                   | 전액 국비 또는 전액 지방비                             |
| 사업 예시 (지정연도) | 하남선(5호선 연장, '11), 도봉산-옥정(7호선 연장, '15), 대구1호선 연장('15) 등 | 충청권('15), 대구권('15) 등     | 수인선('98) 등                                  |

\* 광역철도사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경우 건설보조금, 투자위험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 실시협약에 따라 결정

자료 : 국토교통부

그런데 2000년대 초기까지 지정된 수도권 일부 노선의 경우<sup>10)</sup> 정부가 건설·운영하며 운영비도 전액 부담하고 있는 데 비해, 최근에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운영하며 운영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 재정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실제 광역철도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철도 중 중앙선('98.6 지정), 경

10)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전에도 1970년대부터 광역권의 일상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광역철도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철도노선(광역전철)이 국가에 의해 건설·운영(코레일)되고 있었음. 해당 철도노선은 수도권 전철화 계획(1971)을 시작으로 1970년대부터 국가에 의해 건설·운영되기 시작하였는데, 경부선, 과천선, 분당선, 일산선, 안산선 등이 이에 해당함.

의선('98.6 지정), 수인선('98.6 지정) 등은 국가가 건설하고 국가가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음.

< 광역철도 중 국가가 건설·운영하는 철도 현황 >

| 사업명       |         | 연장<br>(km) | 지정     | 추진현황           | 건 설 | 운 영 |
|-----------|---------|------------|--------|----------------|-----|-----|
| 1. 중앙선    | 청량리-덕소  | 18.0       | '98.6  | 개통 ('05.12.16) | 국가  | 국가  |
| 2. 경원선    | 의정부-동두천 | 22.3       | '98.6  | 개통 ('06.12.15) | 국가  | 국가  |
| 3. 경의선    | 용산-공덕   | 1.9        | '98.6  | 개통 ('14.12.27) | 국가  | 국가  |
|           | 공덕-DMC  | 6.1        |        | 개통 ('12.12.15) |     |     |
|           | DMC-문산  | 40.6       |        | 개통 ('09.07.01) |     |     |
| 4. 수인선    | 수원-한대   | 20.0       | '98.6  | 개통 ('20.9.30)  | 국가  | 국가  |
|           | 한대-오이도  | 12.4       |        | 안산선 공용         |     |     |
|           | 오이도-송도  | 13.1       |        | 개통 ('12.06.30) |     |     |
|           | 송도-인천   | 7.4        |        | 개통 ('16.02.26) |     |     |
| 5. 분당선 연장 | 왕십리-선릉  | 1.8        | '98.6  | 개통 ('12.10.06) | 국가  | 국가  |
|           | 왕십리-청량리 | 1.0        | '21.7  | 계획 검토 중        | 국가  | 국가  |
| 6. 분당선 연장 | 오리-죽전   | 6.8        | '98.6  | 개통 ('07.12.24) | 국가  | 국가  |
|           | 죽전-기흥   | 5.1        |        | 개통 ('11.12.28) |     |     |
|           | 기흥-망포   | 7.4        |        | 개통 ('12.12.01) |     |     |
|           | 망포-수원   | 5.2        |        | 개통 ('13.11.30) |     |     |
| 7. 경춘선    | 망우-금곡   | 17.9       | '03.11 | 개통 ('10.12.21) | 국가  | 국가  |

자료 : 국토교통부

그러나, 최근 건설되어 운영 중인 광역철도 연장선의 운영비 적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광역철도 운영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음.

< 광역철도 연장선 운영비 적자 현황 >

(단위 : 억 원)

| 연<br>번 | 사업명        | 연도별 운영비 적자 |     |     |     | 적자<br>부담주체 | 운영사    |
|--------|------------|------------|-----|-----|-----|------------|--------|
|        |            | '21        | '22 | '23 | '24 |            |        |
| 1      | 하남선(5호선연장) | 161        | 163 | 191 | 미정  | 하남시        | 서울교통공사 |
| 2      | 진접선(4호선연장) | -          | 303 | 322 | 미정  | 남양주시       | 서울교통공사 |
| 3      | 별내선(8호선연장) | -          | -   | -   | -   | -          | 서울교통공사 |

자료 : 국토교통부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 운영비를 분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도시권 광역철도 건설을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먼저,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에서 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광역철도의 운영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없이 소유·운영주체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따라 지자체가 소유·운영하는 광역철도의 운영비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가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건설 비용에 한하여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임.

한편, 「도시철도법」에 따라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국비로 보조 또는 융자하고 운영비는 소유·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으나,

도시철도 노후 차량 교체, 노후레일, 통신망등 도시철도노후시설 교체 등의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하고 있어<sup>11)</sup>, 광역철도로 건

설되는 도시철도 또한 차량 및 노후시설 교체시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다. 국토교통부 의견

광역철도는 운영주체(지자체)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교통시설 대비 높은 비율로 건설비를 지원 중임.

(책임귀속 원칙) 지자체가 건설하는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는 지자체가 소유·운영하므로,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설비용은 대규모

(지역간 형평성) 광역철도에 대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비수도권에는 서울에 비해 높은 보조율 적용 중(서울 50%, 서울 외 70%)이며, 도시철도를 건설 및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인프라간 형평성) 광역철도는 건설 시 다른 인프라 대비 국고 보조비율이 높은 상황(도시철도 60%, 광역도로 50%, 광역 BRT 50%)이고, 운영비 지원 시 다른 광역 인프라간 형평성에 어긋남.

---

11) 「도시철도법」 제22조(정부 지원 등) 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나 도시철도공사가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요자금(所要資金)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 또는 제3조제3호에 따른 법인이 건설·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의 승강장에 전동차 출입문과 연동되어 열리고 닫히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 2. 3.>

⑦ 정부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시철도운영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참고) 2024년 도시철도노후차량개선 사업으로 581억원(국비보조율 25~30%), 도시철도노후시설개선지원 사업에 584억 2,300만원(국비보조율 30~50%)이 편성되었음.

|              |
|--------------|
| 문 의 처        |
| 02)6788-5582 |

## 참고 1

## 광역철도사업 추진 현황

| 사업명                 |           | 연장(km) | 지정     | 추진현황               | 건 설     | 운 영           | 유형         |
|---------------------|-----------|--------|--------|--------------------|---------|---------------|------------|
| 1. 중앙선              | 청량리-덕소    | 18.0   | '98.6  | 개통<br>( '05.12.16) | 국가      | 국가            | 기존선<br>개량  |
| 2. 경원선              | 의정부-동두천   | 22.3   | '98.6  | 개통<br>( '06.12.15) | 국가      | 국가            | 신설         |
| 3. 경의선              | 용산-공덕     | 1.9    | '98.6  | 개통<br>( '14.12.27) | 국가      | 국가            | 기존선<br>개량  |
|                     | 공덕-DMC    | 6.1    |        | 개통<br>( '12.12.15) |         |               |            |
|                     | DMC-문산    | 40.6   |        | 개통<br>( '09.07.01) |         |               |            |
| 4. 수인선              | 수원-한대     | 20.0   | '98.6  | 개통 ( '20.9.30)     | 국가      | 국가            | 신설         |
|                     | 한대-오이도    | 12.4   |        | 안산선 공용             |         |               |            |
|                     | 오이도-송도    | 13.1   |        | 개통<br>( '12.06.30) |         |               |            |
|                     | 송도-인천     | 7.4    |        | 개통<br>( '16.02.26) |         |               |            |
| 5. 분당선 연<br>장       | 왕십리-선릉    | 1.8    | '98.6  | 개통<br>( '12.10.06) | 국가      | 국가            | 신설         |
|                     | 왕십리-청량리   | 1.0    | '21.7  | 계획 검토 중            | 국가      | 국가            | 신설         |
| 6. 분당선 연<br>장       | 오리-죽전     | 6.8    | '98.6  | 개통<br>( '07.12.24) | 국가      | 국가            | 신설         |
|                     | 죽전-기흥     | 5.1    |        | 개통<br>( '11.12.28) |         |               | 신설         |
|                     | 기흥-망포     | 7.4    |        | 개통<br>( '12.12.01) |         |               | 신설         |
|                     | 망포-수원     | 5.2    |        | 개통<br>( '13.11.30) |         |               | 신설         |
| 7. 경춘선              | 망우-금곡     | 17.9   | '03.11 | 개통<br>( '10.12.21) | 국가      | 국가            | 기존선<br>개량  |
| 8. 신분당선             | 강남-정자     | 18.5   | '04.4  | 개통<br>( '11.10.28) | 민간      | 민간            | 신설         |
| 9. 신분당선 연장          | 정자-광교     | 12.8   |        | 개통<br>( '16.01.30) | 민간      | 민간            | 신설         |
|                     | 용산-강남     | 7.8    |        | 개통<br>( '22.05.28) | 민간      | 민간            | 신설         |
|                     | 용산-삼송     | 20.2   | '21.7  | 계획 검토 중            | -       | -             | 신설         |
| 10. 신분당선 연장         | 광교-호매실    | 10.1   | '04.4  | 공사 중               | 국가      | 미정            | 신설         |
|                     | 호매실-봉담    | 7.0    | '21.7  | 계획 검토 중            | -       | -             | 신설         |
| 11. 신안산선            | 안산-시흥-여의도 | 44.9   | '04.4  | 공사 중               | 민간      | 민간            | 신설         |
|                     | 여의도-서울역   | 5.8    |        | 계획 검토 중            | -       | -             | 신설         |
| 12. 별내선<br>(8호선 연장) | 암사-별내     | 12.9   | '07.12 | 개통<br>( '24.08.10) | 지자<br>체 | 지자체<br>(서울·구) | 도시철<br>도연장 |

| 사업명                 |              | 연장(km) | 지정    | 추진현황           | 건 설 | 운 영           | 유형     |
|---------------------|--------------|--------|-------|----------------|-----|---------------|--------|
|                     |              |        |       |                |     | 리·남양주시)       |        |
|                     | 별내-별가람       | 3.2    | '21.7 | 계획 검토 중        | 지자체 | 지자체           | 도시철도연장 |
| 13.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 파주-수서(동탄)    | 82.1   | '14.1 |                |     |               |        |
|                     | 파주-삼성        | 42.6   |       | 공사 중           | 민간  | 민간            | 신설     |
|                     | 삼성-수서(동탄)    | 39.5   |       | 공사 중           | 국가  | 민간            | 신설     |
|                     | 송도-마석        | 82.7   |       |                |     |               |        |
|                     | 송도-용산, 상봉-마석 | 62.8   |       | 보상 중           | 민간  | 민간            | 신설     |
|                     | 용산-상봉        | 19.9   |       | 공사 중           | 국가  | 민간            | 신설     |
|                     | 수원-덕정        | 74.8   |       | 보상 중           | 민간  | 민간            | 신설     |
|                     |              |        |       |                |     |               |        |
| 14. 진접선 (4호선 연장)    | 당고개-진접       | 14.9   | '14.1 | 개통 ('22.3.19)  | 국가  | 지자체 (남양주시)    | 도시철도연장 |
| 15. 하남선 (5호선 연장)    | 상일-검단산       | 7.7    | '14.1 | 개통 (21.3.27)   | 지자체 | 지자체 (서울·하남시)  | 도시철도연장 |
| 16. 도봉산-포천 (7호선 연장) | 도봉산-옥정       | 15.0   | '15.8 | 공사 중           | 지자체 | 지자체 (의정부·양주시) | 도시철도연장 |
|                     | 옥정-포천        | 17.5   | '21.7 | 설계 중           | 지자체 | 지자체 (양주·포천시)  | 도시철도연장 |
| 17. 충청권 광역철도        | 계룡-신탄진(1단계)  | 35.4   | '15.8 | 설계 중           | 국가  | 지자체 (대전·충남도)  | 기존선 개량 |
|                     | 신탄진-조치원(2단계) | 22.6   |       | 계획 검토 중        | -   | -             | 기존선 개량 |
|                     | 강경-계룡(3단계)   | 40.7   |       | 계획 검토 중        | -   | -             | 기존선 개량 |
|                     | 오정-옥천        | 20.1   | '21.7 | 설계 중           | 국가  | -             | 기존선 개량 |
| 18. 대구호선 연장         | 안심-하양        | 8.7    | '15.8 | 개통 ('12.12.21) | 지자체 | 지자체 (대구·경산시)  | 도시철도연장 |
|                     | 하양-영천        | 5.0    | '21.7 | 기본계획 중         | 지자체 | 지자체           | 도시철도연장 |

| 사업명                           |                   | 연장(km) | 지정    | 추진현황    | 건 설     | 운 영                        | 유형         |
|-------------------------------|-------------------|--------|-------|---------|---------|----------------------------|------------|
| 19. 대구권<br>광역철도               | 구미-경산             | 61.9   | '15.8 | 공사 중    | 국가      | 지자체<br>(대구·구<br>미<br>·경산시) | 기존선<br>개량  |
| 20. 대장흥대선                     | 부천대장~흥대입구         | 18.4   | '21.7 | 공사 중    | 민간      | 민간                         | 신설         |
| 21. 위례과천선                     | 북정~정부과천청사         | 22.9   | '21.7 | 계획 검토 중 | -       | -                          | 신설         |
| 22. 신구로선                      | 시흥대야~목동           | 12.4   | '21.7 | 계획 검토 중 | -       | -                          | 신설         |
| 23. 제2경인선                     | 청학~노온사            | 21.9   | '21.7 | 계획 검토 중 | -       | -                          | 신설         |
| 25. 강동·하남·남양<br>주선 3호선 연<br>장 | 강동~하남~남양주         | 18.1   | '21.7 | 기본계획 중  | 지자<br>체 | 지자체<br>(서울·고<br>양시)        | 도시철<br>도연장 |
| 26. 인천2호선<br>고양 연장            | 인천 서구~고양 일산<br>서구 | 18.5   | '21.7 | 예타 중    | -       | -                          | 도시철<br>도연장 |
| 27. 고양-은평선                    | 새절~고양시청           | 13.9   | '21.7 | 기본계획 중  | 지자<br>체 | 지자체<br>(서울·고<br>양시)        | 도시철<br>도연장 |
| 28. 서부권<br>광역급행철도             | 장기~부천종합운동장        | 21.1   | '21.7 | 계획 검토 중 | -       | -                          | 신설         |
| 29. 송파-하남선<br>(3호선연장)         | 오금~하남시청           | 12     | '21.7 | 기본계획 중  | -       | -                          | 도시철<br>도연장 |
| 30. 위례삼동선                     | 위례~삼동             | 10.4   | '21.7 | 예타 중    | -       | -                          | 도시철<br>도연장 |
| 31. 일산선 연장                    | 대화~금릉             | 13     | '21.7 | 계획 검토 중 | -       | -                          | 신설         |
| 32. 분당선 연장                    | 기흥~오산             | 16.9   | '21.7 | 계획 검토 중 | -       | -                          | 신설         |
| 33. 부산~양산<br>~울산              | 부산 노포~KTX 울산<br>역 | 50.0   | '21.7 | 예타 중    | -       | -                          | 신설         |
| 34. 동남권순환                     | 진영~울산역            | 51.4   | '21.7 | 계획 검토 중 | -       | -                          | 신설         |
| 35. 동해선                       | 태화강~송정            | 9.7    | '21.7 | 계획 검토 중 | -       | -                          | 기존선<br>개량  |
| 35. 광주-나주                     | 상무역-나주역           | 28.1   | '21.7 | 예타 중    | -       | -                          | 신설         |
| 36. 대전-세종                     | 반석동-어진동           | 14.0   | '21.7 | 계획 검토 중 | -       | -                          | 신설         |